

춘천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나53874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나53874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가단579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고슬아, 손태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정문

피고, 항소인B

피고보조참가인C

변론 종결2020. 9. 24.

판결 선고2020. 10. 22.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가단5790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D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66.15㎡를 철거하고, 춘천시 D 대 661㎡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희호

판사김현정

판사송종선